

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[]주택임차
[]상가임차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임차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
임대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전자우편주소	
임차할 건물 소재지 (건물의 종류·명칭 및 동·열·층·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 재합니다)			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아래의 임대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지방세 등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등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임대인 동의서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이 본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임대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이 동의서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유의사항
1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까지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. 2.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.